

# 공제금 청구서

◇ 수혜자가 판매원인 경우 매매대금의 최대 90%(1500만원 한도), 소비자는 최대 100%(600만원한도)까지 보상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제조합 홈페이지의 피해보상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은 매매대금의 최대 70%(500만원 한도), 소비자는 최대 90%(200만원 한도)

◇ 공제금 청구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모든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공제금 청구 접수는 취소됩니다.

## 1. 공제금 청구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 반드시 청구자 본인의 연락처 기재요망		
공제금을 받을 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상기 본인은 공제금을 청구함에 있어 귀 조합이 공제금 지급 심사와 공제금 지급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제금 지급심사 및 공제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5년간 보관됩니다.

(체크) 예  아니오

## 2. 청약철회(반품) 내역 (기재 및 괄호 안에 V 체크)

회사명			
회사와의 구매계약체결일	20	년	월 일
회사에 지불한 금액	금	원(₩_____원)	
반품한 날짜(조합에 반품한 경우 미기재)	20	년	월 일
반품금액 (또는 공제금 신청금액)	금	원(₩_____원)	
회사에 재화 등을 반품하였는지 여부	반품( ), 미반품( ), 미수령( )		
후원수당 수령 여부	미수령( ), 수령( ) ☞ 금액 : (₩_____원)		

## 3. 공제조합 확인(담당자 : )

공 제 조 합 확 인	공제금 청구서	
	상품구매 계약서	
	대금결제 증빙서류	
	반품접수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직접판매공제조합 귀중

※ 공제금청구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비고
1	공제금 청구서	(조합양식) 우리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2	상품구매 계약서	회사의 접수도장 날인, 구매일자, 구매금액, 구매상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류
3	대금결제 증빙서류	○ 신용카드: 승인번호가 보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 국세청발급 현금영수증, 또는 회사로 입금•이체시 은행발급 증빙서류
4	반품접수 증빙서류	회사에 재화등을 반환했다는 근거서류(회사의 반품접수 확인 도장 날인 필수)
5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6	통장 사본	공제금청구자 본인의 통장사본 제출(타인통장 제출불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에 대한 아래 설명을 꼭 참고하십시오.

우리조합은 상기 구비서류 제출이 완료된 공제금청구 건에 대하여 공제금지급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며, 공제금산정 [(공제금 청구금액 - 기일공제 + 지연배상금)\*90% - 후원수당]에 따라 산출된 공제금을 청구자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우리조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공제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1. 수해자가 법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가. 다단계판매원이 재고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 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 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 다. 수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라.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만,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정
    - 마.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바. 수해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 사.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회사로부터 재화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공제조합에게 재화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3. 수해자가 재화 등의 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개별재화 등을 다단계판매자로부터 구입한 경우(단, 160만원까지 보상청구 가능)
  4. 수해자가 회사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5. 공제계약이 해지 된 이후에 수해자가 회사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경우
  6. 피해보상약관 제2조에서 정한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7. 수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공제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
  8. 수해자가 회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입금계좌 이외의 신용카드 가맹점 및 입금계좌를 이용한 경우
  9.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의 사유로 인해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10. 공제조합에서 제한하고 있는 거래제한 물품을 거래한 경우
  11. 구비 서류를 미제출(공제금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하거나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불충분 또는 허위로 작성이 되었을 경우
  12. 수해자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하는 경우
- ※ 수해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공제금을 청구한 경우, 제출한 공제금 청구서의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수해자의 구매계약, 청약철회, 대리권 위임 여부 등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공제조합이 추가 서류 또는 공제조합 내방 등 기타 제반사항을 안내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수해자가 방문판매법 상의 판매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입국관리법상의 적법한 체류자격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기타 다단계판매원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보상이 제외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청구 관련 문의처 : 직접판매공제조합 소비자피해예방실(02-566-1202, ARS 2번)

공제조합의 보상관련 절차, 현황 등은 홈페이지(www.macco.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